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공간정보 정의 마련 및 보안관리 관련 제도 개편 등》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89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2206889�)	1
1. ������	1
2. ������	1
3. ������	2
4. ������	4
가. ������ ��� ���	4
나. �������� �� ������������������ ��� ����	
(�� ��2���1���2 �� ��2���2 ����)	7
다. �������� ������ ���� ����(�� ��5���2�� �� ��19���1��	
���� ��8����)	15
라. ������������� ������� ���� ����(�� ��29���1�����	
��3����)	25
마. ������ ������� ����� �� ��� ������� ��� ����	
(�� ��34���2��)	29
바. ������� �������� ������ ���� ����(�� ��35���2�����	
��5����)	33
사. ������ ���� ����� ���� ����(�� ��35���2���2�� ����) ...	39
아. ������ ������ ������� ���� ����(�� ��35���3,	
��35���4��1�� �� ��35���5��1��)	42

자. 국가 보안시설 관련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6 신설)	48
차.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54
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38조의3)	58
타. 벌칙(안 제40조)	60
파. 부칙	62

I. 업무영의원 대표발의(제220688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업무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4.

다. 회 부 일 : 2024. 12. 26.

2. 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다른 정보들과 잘 융복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공간정보를 지정·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33종)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개념적·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생성한 공개제한 공간정보까지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관리기관별로 시행함에 따라 동일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보안심사를 중복으로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보안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자체 구축·생산하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적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기반을 마련함(안 제2조·제5조·제19조·제29조).

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함(안 제34조).

다. 관리기관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를 삭제하는 등 보안관리규정 제·개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

라.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제35조의3·제35조의4 및 제35조의5).

1) 보안심사를 받은지 1년 이내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심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함.

2) 관리기관별로 지정하던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지정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마. 군사시설 등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성검토 및 보안처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은 1995년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0년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법률」(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제정(2000. 1. 21. 제정, 2000. 7. 1. 시행)됨으로써 그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미래의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행정의 근거를 확충하며,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왔음.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¹⁾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합리성과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패러다임이 현실세계를 분석·예측·관제하는 ‘디지털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트윈국토’²⁾로 진화하고 공간정보 기반 행정 및 산업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기본공간정보³⁾의 개념과 관리 체계를 재편하고 국가공간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본공간정보와 관련된 행정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공간정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 심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가공간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기본공간정보를 기초로 한 공간정보의 융복합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공간정보 기반 행정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되며,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로 검토함.

2)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은 공간정보 3D 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적용하여 각종 기후·환경, 교통, 재난·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며, 2023년 고시된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공간정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현실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디지털트윈체계(National Digital Twin)’의 구축 및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트윈국토에 대한 제도적 육성 및 관리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참고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제2206907호)에서는 ‘디지털트윈국토’를 “현실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활용 기술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로 정의함.

3) 기본공간정보에 대해서는 ‘나.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신설’ 항목에서 기술함.

〈표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조항	주요 내용	
기본 공간정보	안 제2조(정의)	개념	◦ 기본공간정보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상세 유형을 관보 고시로 구체화(제1의2호) ◦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의 규정 신설(제2의2호)
	안 제5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선정	◦ 기본공간정보 선정 절차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추가(안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19조제1항)
	안 제19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구축 관리 활용· 협력	◦ 기본공간정보의 구축 기준 정비(제2항·제3항) ◦ 기본공간정보 통합관리 강화(제4항·제5항) ◦ 기본공간정보 접근 편의성 및 협력체계 강화(제6항·제7항)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안 제29조 (중복투자의 방지)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신규 구축뿐 아니라 ‘갱신’ 시에도 중복투자 방지 절차 적용(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 제34조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제2항)	
	안 제35조 (보안관리)	◦ 보안관리규정 제 개정 시 전문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 ‘폐지’ 및 관리기관 중 공공기관·민간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변경(제2항) ◦ 국가정보원장의 ‘기본지침’ 작성 근거 법률에 명시(제3항)	
	안 제35조의2 (보안심사)	◦ 보안심사 후 1년이 미경과한 자에 대해 관리기관의 장이 보안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제2항)	
	안 제35조의3부터 안 제35조의5까지	◦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 안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안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안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안 제35조의6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등) 〈신설〉	◦ 국가 보안시설 관련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근거 마련	
보칙	안 제38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등)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8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적용 대상에 ‘수탁기관의 임직원’ 추가 및 적용 벌칙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 추가	
벌칙	안 제40조(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 폐지(제4호 삭제) ※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지정취소)만 유지	

나.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신설
(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u><신 설></u> 2. (생 략) <u><신 설></u> 3. ~ 7. (생 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u>1의2. “기본공간정보”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융복합·활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적인 공간정보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u> 2. (현행과 같음) <u>2의2.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하여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u> 3.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것임.

(1) 기본공간정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

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⁴⁾이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⁵⁾에 따르면, 지형·해안선·행정경계·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관보에 ‘고시’하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라 함.

기본공간정보는 2000년 제정(2000. 1. 21. 제정, 2000. 7. 1. 시행)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해 10월 수립된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00~’05)」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지리정보의 광범위한 수요자가 다양하게 지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지리정보를 구축·제공하고자 2003년부터 ‘기본지리정보’(현 기본공간정보)로서 구축되기 시작하

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해안선·행정경계·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였으며, 이후 확대·구체화를 거치며 현재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에서 33종의 기본공간정보를 구축·관리⁶⁾하고 있음⁷⁾.

이와 관련하여, 동일 지형지물에 대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공간 정보가 생산되고 있어 공공·민간이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어떤 공간 정보가 국가적으로 기본이 되는 정보인지 기준이 필요하고, 최근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패러다임이 현실세계를 분석·예측·관제하는 ‘디지털 트윈 국토’⁸⁾로 진화하면서 공공·민간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공간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목적 등을 담고 있는 정의 규정 없이 기본공간정보의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고, 법에 예시된 항목도 분류상 체계성이 미흡⁹⁾하며 입체적·복합적인 공간

6) 기본공간정보의 개요는 ‘참고 1’ 참조.

7) UN,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가에서도 기본공간정보를 선정·구축·관리하고 있음. 해외 및 국내의 기본공간정보 항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참고 2’ 참조.

8) ‘각주 2’ 참조.

9) 「기본공간정보 선정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호)은 기본공간정보를 대분류 12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33개로 구분함. 강조표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예시된 항목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계	행정구역	법정경계
		<u>행정경계</u>
	통계구	통계구
교통	도로	<u>도로경계선</u> , <u>도로경계면</u> , 도로노드, 도로링크, 인도
	도로시설	점형도로시설, 선형도로시설, 면형도로시설
	철도	<u>철도경계면</u> , 철도노드, 철도링크
	철도시설	점형철도시설, 면형철도시설
해양	해양경계	<u>해안선</u>
	해저지형	수심
수문	하천	<u>하천경계</u> , 실폭하천, 하천중심선

정보의 개념을 담고 있지 못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¹⁰⁾와의 구분이 일부 모호¹¹⁾하다고 보이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개념 정립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 법규상 기본공간정보의 정의는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¹²⁾에 마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상향입법을 통해 기본공간정보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¹³⁾.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수로시설	수로시설
<u>지적</u>	연속지적도	연속지적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u>지형</u>	수치표고모형	수치표고모형
지명	육상지명	육상지명
	해양지명	해양지명
위치기준	측량기준점	측량기준점
시설물	<u>건물</u>	건물
	건물중심점	건물중심점
	건물시설	건물시설
영상	정사영상	정사영상
시설	입체모형	입체모형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
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11) 국가기본도와 기본공간정보의 비교는 ‘참고 3’ 참조.

12)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정보를 말한다.

13) 정부가 제20대국회에 제출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7.7.21. 제출, 의안번호 제2008154호)도 기본공간정보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이에 안 제2조제1호의2의 신설은 현행법 제19조제1항과 제2항14)에 규정된 기본공간정보에 관한 사항과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상 기본공간정보의 정의 규정을 보완·개편하려는 것으로, 기본공간정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에 예시된 기본공간정보의 상세 항목은 정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 기본공간정보 정의 규정 관련 개편안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	미규정	◦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기 위해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융복합·활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적인 공간정보 ◦ 안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	◦ 상세 항목 삭제 → 하위 규정(고시)에서 구체화
제19조 제1항	◦ 지형·해안선·행정경계·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 ◦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	삭제	※안 제19조제1항: 국가공간정보 선정 절차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추가

된 바 있음.

1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해안선·행정경계·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후술하려는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구축·관리 및 활용·협력 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기본공간정보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기본공간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한편, 현행법 제19조제1항15)에는 기본공간정보의 상세 항목이 예시되어 있으나, 안 제2조제1호의2에는 이와 같은 상세 항목이 제외(표 2 참고)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공간정보의 상세 항목을 법정 사항으로 명시하는 대신 관보 고시를 통해 구체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기본공간정보의 상세 항목은 기술·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행정규칙을 통해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기본공간정보는 공간정보를 상호 용이하게 융복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운영하는 중요한 정보이나 운영 및 관리체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1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해안선·행정경계·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의 규정 개편(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제2항¹⁶⁾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공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제2호의2의 신설은 기본공간정보와 함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정의 조항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 기본공간정보의 집합체이자 활용 기반이며 현행법은 ‘공간정보’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순차적으로 정의¹⁷⁾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와 병렬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법 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보임.

〈표 3〉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정의 규정 관련 개편안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	미규정	◦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하여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안 제19조제2항: 구축 주체 변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의 장)
제19조 제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삭제	

1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구축·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1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기본공간정보는 공간정보를 상호 용이하게 융복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운영하는 중요한 정보이나 운영 및 관리체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추가적으로, 안 제2조제2호의2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조제2호의2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하여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19조제2항18)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기준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고 구축·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구축·관리 기준의 주체와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규정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 제2조제6호19)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근거 조문으로서 ‘제19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안 제2조제2호의2에 정의규정이 신설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해당 조문의 자구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다. 기본공간정보 선정·관리 절차 개선(안 제5조제2항 및 제19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③ ~ ⑦ (생략)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기본공간정보의 선정·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지형·해안선·행정경계·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하천경계·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u>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u>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구축·관리하는 데이터</u>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① -----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고</u> ----- ② <u>제1항-----기본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보를---</u> ----- -----. ③ <u>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본공간정보데</u>

현행	개정안
<u>베이스(이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u>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u> ④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하여 공개·제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절차, 기본공간정보·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현 행	개 정 안
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안 제5조 및 제19조는 기본공간정보의 선정(안 제5조제2항 및 제19조 제1항), 구축(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관리(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활용(안 제19조제6항) 및 협력체계(안 제19조제7항)에 관한 사항을 개편 하려는 것임.

(1)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절차 개편(안 제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안 제5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²⁰⁾의 심의 사항에 ‘기본공간정보의 선정·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이고(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안 제19조제1항은 안 제5조제2항과 연계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임.

기본공간정보는 다양한 관계기관의 공간정보 구축·관리 등에 영향을 주는 사항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부시장·부지사) 또는

2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간정보체계 관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²¹⁾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그 선정·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활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시대적 요구, 기술·환경 변화, 신산업 등에 필요한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2) 기본공간정보의 구축 기준 정비(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현행법 제19조제2항²²⁾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19조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기본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이라 함)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

2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2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기본공간정보(이하 “기본공간정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고²³⁾ 기본공간정보의 복잡성·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각급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이 직접 구축·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이와 아울러, 안 제19조제3항은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의 장이 관리기관²⁴⁾의 장에게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관리기관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공공·민간의 주체로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체계성·통일성을 위해 이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²⁵⁾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관리기관의 일부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 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임.

23)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5개 기관으로 그 중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및 통계청이 있고, 소속기관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립해양조사원이 있음. 각 기관이 담당하는 기본공간정보에 대해서는 ‘참고 1’ 참조.

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2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1조(협력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도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현실화·명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제19조제2항에 동의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구축·관리를 위해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이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자료·정보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 제19조제3항에 동의하는 입장임.

(3) 기본공간정보 통합관리 강화(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현행법 제19조제3항²⁶⁾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기관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9조제4항은 이와 같은 현행법 제19조제3항을 개편하여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으로 하여금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제공받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K-Geo)²⁷⁾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

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구축·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27)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K-Geo)의 개요는 ‘참고 4’ 참조.

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²⁸⁾를 의미하는데, 현행법 제19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기관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로서 기능하기에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안 제19조제4항은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이 소관별로 구축·관리하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공간정보체계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상 타당한 조치로 보임.

한편, 안 제19조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인데, 전자정부의 원칙²⁹⁾에

2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29)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상호운용성’³⁰⁾의 증진이 포함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도 상호운용성과 유사한 공간정보의 ‘호환’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³¹⁾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운용성의 확보는 타당한 목적으로 이해되고,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연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되는 한편 해당 규정을 근거로 안 제38조의²³²⁾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각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30)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따르면,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플랫폼 간 차이를 극복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통신하는 능력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화한다_건물 교통 등 데이터 연계한 국가표준 제정」, 2023. 10. 29.).

3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32) 「개정안」

제38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4) 기본공간정보의 접근 편의성 및 협력체계 강화(안 제19조제6항 및 제7항)

안 제19조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 공간정보통합체계(K-Geo)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공간 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이하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라 함)’³³⁾을 통하여 공개·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9조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의 장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각 개정안은 기본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법정화 및 확대하고 기본공간정보 관련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요자의 기본 공간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보 유통을 활성화하며 기본공간정보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되며, 국토교통부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각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추가적으로, 안 제19조제7항은 “상호운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 제19조제5항에서는 “상호운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수의 입법례³⁴⁾ 및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FAIR’ 원칙³⁵⁾과

33)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의 개요는 ‘참고 5’ 참조.

3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1조(기술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신뢰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련된 논의에서 “상호운용성”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이를 “상호운용성”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3조(표준화) ① 정부는 가상융합서비스등에 관한 기술, 통신, 보안, 호환성,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이하 “표준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 35) 데이터 과학자들은 2016년 데이터의 책임관리(stewardship)와 활용을 높이는 원칙으로 FAIR를 제시하였음. FAIR 원칙은 데이터의 검색성(Find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재사용성(Reusability)으로 구성되며, 미국, 영국, EU 등에서는 공간정보를 FAIR 원칙에 적합하게 구축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성혜정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데이터 개방에서 활용으로, 공간정보가치 증대를 위한 FAIR 원칙 도입방안」, 『국토정책 Brief』, 제990호(2024. 11. 18.). 참고)

한편,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세부과제의 하나로 ‘공간정보의 종합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등 FAIR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정보 공유플랫폼 고도화 추진’을 제시한 바 있음.

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중복투자 방지 강화(안 제29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u>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u>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 ----- <u>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u> ----- ----- ----- -----.
1. <u>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u>	1. <u>구축 또는 갱신하고자</u>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관리기관의 장이 <u>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u>	② ----- <u>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u> ----- ----- <u>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u> ----- ----- -----.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u>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u>구축하고자 하는</u></u>	③ ----- ----- <u>구축 또는 갱신</u> ----- ----- ----- ----- <u>구축 또는 갱신</u>

현 행	개 정 안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생략)	----- -----. ④·⑤ (현행과 같음)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광범위하게 구축·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투자 여부 등 사전검토, 신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통보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 요구 절차³⁶⁾ 등 중복투자 방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신규 ‘구축’뿐 아니라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중복투자의 방지를 위한 절차가 적용되도록 중복투자 방지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축적 및 그 활용과 융복합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갱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정안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갱신 시에도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간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성도 증진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36)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중복투자 여부 검토 절차는 ‘참고 6’ 참조.

한편, 개정안은 ‘갱신’ 중 경미한 갱신 등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관리기관에는 민간기관³⁷⁾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무를 확대하는 소지가 있는 개정안이 민간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공간 정보산업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중복 구축으로 인한 불필요한 국가 예산 낭비 예방을 위해 갱신 및 고도화 등의 경우에도 중복투자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2017년 감사원³⁸⁾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 제도와 관련하여 동 제도가 신

37) 현행법의 중복투자 방지 규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정(2000. 2. 21. 제정, 2000. 7. 1. 시행)부터 이어져 왔으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2009. 2. 6. 제정, 2009. 8. 7. 시행) 이후부터 관리기관의 범위에 민간기관이 포함되었음.

현재 관리기관 중 민간기관으로는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주)케이티 및 코원에너지서비스(주) 등 40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송유관 관리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38) “공간정보법 제29조(2015. 6. 4. 법률 제12738호로 개정 전에는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전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등도 포함

규 구축 이외에 수정 및 구축 범위(지역, 객체 내용 등) 확대 등에도 적용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하고 있고,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는 상호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간정보표준 준수계획과 공간정보의 공유·연계계획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중략)

데이터 품질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서 적용되어야 할 표준은 응용스키마 규칙(KS X ISO 19109) 등 총 6개이고, 이 가운데 품질 원칙(KS X ISO 19113) 등 4개 표준은 공간정보 데이터의 수정, 구축 범위의 변동 등 기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나 공간정보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중략)

따라서 사전검토 대상은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뿐만 아니라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수정 및 구축범위(지역, 객체내용 등) 확대 등을 포함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표준적용계획 검토 시 적용대상 작업기준과 성과품 검사기준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지원하는 등 연차사업별 공간정보사업이 부실하게 준공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검토의 대상 기준과 절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감사원, 「국가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실태(데이터의 정확성·최신성 확보를 중심으로) 감사보고서」, 2017. 2. 19~21쪽).

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 확대
(안 제34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u>관리기 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 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 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u>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 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 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 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2. (생 략) ③ ④ (생 략)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관리기 관의</u>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4조제1항³⁹⁾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3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
는 배포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되, 법령과 보안관리 규정⁴⁰⁾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이하 “공개제한 공간정보”라 함)에 대하여는 복제·판매·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편, 현행법 제34조제2항⁴¹⁾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판매·제공 등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34조제2항은 일정 요건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현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4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

‘관리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제2항은 고해상도 공간정보 등 정밀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에서 2021년 개정(2021. 3. 16. 개정, 2022. 3. 17. 시행)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이후 디지털 신산업 분야를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2024년 개정(2024. 3. 19. 개정·시행)을 통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음.

〈표 4〉 공개제한 공간정보 접근 제한 완화 관련 제도개편 현황

구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제17942호 (2021. 3. 16. 개정, 2022. 3. 17. 시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제20390호 (2024. 3. 19. 개정·시행)	개정안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주체	◦ <u>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u> 에 한정	◦ 좌동	◦ <u>관리기관</u> ※ 모든 관리기관
제공 대상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에 따른 <u>공간정보사업자</u>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위치정보사업자</u>	◦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 업을 영위하려는 <u>법인 및 개인사업자</u> ◦ <u>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u> 공간 정보를 활용하려는 자	◦ 좌동

2025년 1월 기준 관리기관 중 공공기관은 327개, 민간기관은 40개로서
관리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에서 방대한

분량의 공간정보가 구축·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신산업 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보다 촉진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⁴²⁾, 국토교통부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참고로, 안 제34조제2항의 개정이 반영되는 경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및 제35조의5의 관리기관의 범주도 함께 변동되는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조항에 관한 검토에서 후술함.

42) 국토교통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길라잡이」(2024. 3.)에 따르면,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목적에는 비공개 정보가 아닌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산업계에 제공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신산업(자율주행, 드론, AR·VR 등)을 발전시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공간정보를 기업들이 사용하도록 하여 재정 투자의 효과를 얻기 위한 측면이 있음.

바.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절차 개선(안 제35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보안관리) ① (생 략)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u>제정하는 경우에는</u> <u>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u> <u>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u> <u>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u> <u>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35조(보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정 또는 개정하는</u> <u>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u> <u>국가정보원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u> <u>관의 장과-----</u> . <u><후단</u> <u>삭제></u> 1. 관리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인 경우: 국가정보원장 2. 관리기관이 공공기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인 경 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 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 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 항을 반영하는 경우 2. 보안관리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 점 개선 및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현행법 제35조⁴³⁾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시행하여야 하고(제1항), 보안관리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⁴⁴⁾(이하 “전문위원회”라 함)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함(제2항).

안 제35조는 이와 같은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절차 등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시 모든 관리기관에 적용되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폐지하고(안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시 모든 관리기관이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을 변경하여 관리기관 중 공공기관·민간기관은

4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①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안 제35조제2항 각 호 신설),

국가정보원장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령의 기본지침 작성 근거⁴⁵⁾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안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실시하여야 하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35조제4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신설).

보안관리규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제·개정에 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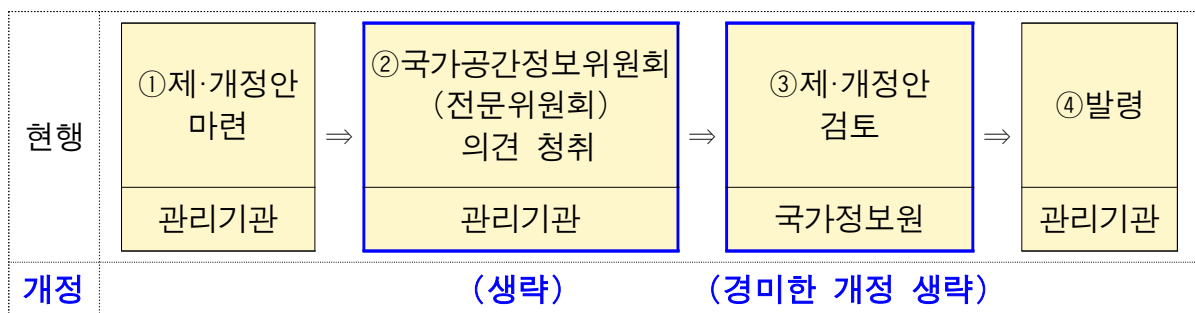
4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단계와 장시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가정보원의 기본지침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정례적인 개정 수요가 발생하여도 모든 관리기관이 반드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현행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절차가 관리기관과 국가정보원에 필요 이상의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관리기관의 유형 및 보안관리규정 개정사항의 경중 등을 기준으로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관리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행정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5〉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절차 개편(안)



※ 자료: 국토교통부

추가적으로, 안 제35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35조제2항제2호는 관리기관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인 경우’에 관한 사항인데, 관리기관의 범주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⁴⁶⁾이 심사 중인바, 관리기관의 범주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법률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35조제4항제2호는 보안관리규정과 관련한 경미한 개정 사항으로 “보안관리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자구 수정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법률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하위 규정 위임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보안관리규정 제·개정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국가정보원의 기본지침 변경 시 신속한 규정 개정을 통해 행정효력이 발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있다는 의견이며,

46)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774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안 제35조제2항제1호는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단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가정보원의 의견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사. 보안심사 절차 간소화 기준 마련(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생략) <u><신설></u>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관리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법 제35조의2제1항⁴⁷⁾에 따르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⁴⁸⁾의 장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일정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

4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를 할 의무가 있는데,

개정안은 보안심사 절차의 예외로서 관리기관의 장이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제2항 신설).

현행 보안심사 제도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⁴⁹⁾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적합한 관리체계, 접근통제정책, 물리적 보안 환경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정기심사(1년 단위), 갱신심사, 변경심사 및 특별심사 등을 통해 심사받아야 함.

이를 종합하면, 보안심사는 특정 공간정보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제도적·기술적·물리적 요건에 관한 것인데, 다수의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건에 대하여 해당 모든 관리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과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49)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심사에 필요한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안심사 기준) 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심사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별표 1]은 ‘참고 7’ 참조.

이에 개정안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특정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안심사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관리기관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관리기관에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적인 보안심사 요소를 생략하는 등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관리기관과 민간의 행정적·재정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국토교통부도 개정안의 이와 같은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권한 개편(안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u>관리기관의 장</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u> ----- ----- ----- -----지정하여 운영-----.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② <u>관리기관의 장</u> 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u>관리기관의 장</u> 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u>경우에</u>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u>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u> ----- ----- <u>경우</u> -----.
③ <u>관리기관의 장</u> 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u>경우에</u>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u>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u> ----- ----- <u>경우</u> -----.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u>관리기관</u> 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① <u>관리기관</u> 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① <u>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⁵⁰⁾에게는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보안심사 전문기관”

5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이라 함)의 지정·취소 권한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조사⁵¹⁾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1)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
(안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제1항)

개정안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보유하는 관리기관의 범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는 한편(안 제35조의3제1항·제3항·제4항 및 제35조의4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⁵²⁾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해양조사

51)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협회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 (이하 “보안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으로 집중되어 있으며⁵³⁾, 이로써 경쟁원리 도입에 따른 효과보다는 한정된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한 중복 지정 등으로 운용 상의 비효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데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국토교통부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추가적으로, 안 제35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안 제35조의4제1항은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시 이를 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53)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사례는 다음과 같음.

관리기관	전문기관 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행정안전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안 제35조의3제1항 단서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관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제2항 신설)

안 제35조의3제2항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보안심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안 제3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안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제1항 등의 개정을 전제로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한편, 안 제35조의3제2항의 주체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관리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관리기관의 장” 등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같은 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 보유기관 개편 (안 제35조의5제1항)

안 제35조의5제1항은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을 보유하는 관리기관의 범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보유하는 관리기관의 범주를 개편하려는 안 제35조의3제1항·제3항·제4항 및 제35조의4제1항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권한이 축소됨에 따라 보안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보안심사의 적정 여부를 각급 관리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을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⁵⁴⁾이므로,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4) 다만, 이 경우 관리기관 중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도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확대되는 경우 안 제35조의5제1항 중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자. 국가 보안시설 관련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6(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등) ①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위장·삭제·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중 국방부장관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처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업무 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안처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로 하여금 군사기지·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⁵⁵⁾ 등(이하 “보안시설”이라 함)이 공간정보에 표시

되지 아니하도록 위장·삭제·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리”라 함)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35조의6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보안시설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함)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며(안 제35조의6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제3항).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15조⁵⁶⁾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防空)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에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에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5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⁵⁷⁾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촬영·묘사·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간정보에 보안시설 등을 표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리기관이 구축하는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또는 국방부의 검토·요청을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의 보안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의 근거가 미흡하고,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공간정보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 보안처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가 없어 이를 생산·가공·판매·유통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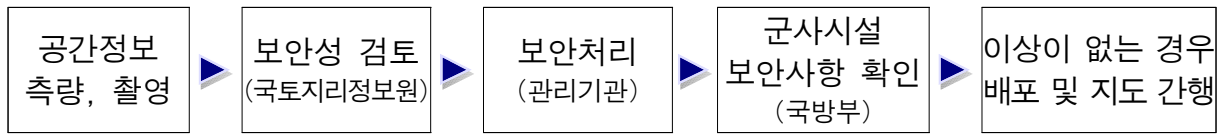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5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6〉 관리기관이 구축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 절차



※ 자료: 국토교통부

특히, 위성자료 등을 활용한 고정밀 공간정보가 급속도로 확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처리 근거 미흡으로 인한 공간정보 활용 제약은 공간 정보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바,

개정안은 관리기관과 아울러 민간이 구축하는 공간정보에 대해서도 보안처리를 전제로 생산·가공·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성 검토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안보 등의 공익과 민간의 자율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되며, 국토교통부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35조의6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하면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처리 후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보안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한 자나 규

정에 부합하지 않는 보안처리를 한 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정 제재 또는 벌칙 등을 부과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보안처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35조의6제1항은 보안처리 의무 이행의 주체를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간정보의 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도 보안처리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현행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간정보산업’의 정의에서 공간정보의 활용 방식으로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제시⁵⁸⁾하고 있고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는 공간정보산업에 속한 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 간 유사한 개념을 통일할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
 -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 라.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셋째, 안 제35조의6제3항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요청 권한 및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의 협조 의무와 관련하여,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규정⁵⁹⁾을 참고하여 자료요청의 목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특별한 사정”이라는 표현을 “특별한 사유”로 수정하는 등 자구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9)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차.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하고 수탁기관에 위탁업무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재 현행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업무의 일부를 국토지리정보원장 등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임·위탁이 법적 규정 없이 내부 방침 및 하위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고, 국가공간정보 관련 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고도화를 위해 위임·위탁을 체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현실적으로 위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체계 혼란을 방지할 필요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른 위임·위탁 근거 마련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위임·위탁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의견임.

〈표 7〉 개정안에 따른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계획(안)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업무	수탁기관(안)
○ 시행계획 통합, 중복투자 사전검토(제7조, 제29조)	국토연구원
○ 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제20조)	국토지리정보원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등의 품질관리(제24조)	한국국토정보공사
○ 국토현황 조사 및 공간정보 제작(제32조제2항)	국토지리정보원
○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안 제35조의6)	국토지리정보원

※ 자료: 국토교통부

추가적으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⁶⁰⁾이 국토교통

60)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907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3(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38조의2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7조제1항⁶¹⁾은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

현 행	개 정 안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6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하여 수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38조의2제2항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의 시행(2024. 2. 20. 제정, 2025. 2. 21. 시행)⁶²⁾을 반영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근거 법률을 인용하고, 안 제38조의2제3항의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자구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던 종전의 제3장이 삭제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임.

카.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38조의3)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의3(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의 임직원과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제127조 및 제129조----- ----- -----.

개정안은 현행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과 적용 별칙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적용 대상에 ‘안 제38조의2제2항⁶³⁾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을 추가하고, 적용 별칙에 「형법」 제127조⁶⁴⁾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업무가 증대되고 위임·위탁 규정이 신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체계의

63) 「개정안」

제38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64)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적용 별칙을 확대하는 것은 현행법상 ‘비밀준수 등의 의무’⁶⁵⁾ 및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추가적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⁶⁶⁾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위임·위탁 규정의 신설에 따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할 뿐 아니라 「형법」 제127조를 추가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6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관리기관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6)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907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3(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타. 벌칙(안 제40조)

현 행	개 정 안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u>	제40조(벌칙)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 적용되는 벌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5조의4제1항⁶⁷⁾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제재(지정취소)와 벌칙이 중복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보다 실효성이 높으면서도 덜 침익적인 법적 수단이 활용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6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며,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⁶⁸⁾ 추진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국토교통부는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형벌 집행 실적도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68) 정부는 민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을 경제형벌로 규정하고 과도한 형벌로 인해 경제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범부처 경제형벌 개선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운영 중임. 경제 형벌규정 개선은 ①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처럼 행정 제재만으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한 경우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② 행정제재를 통해 일차적으로 개선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우선 부과하고 불이행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거나, ③ 위반행위 대비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불합리한 형량을 조정·폐지하여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파. 부칙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기관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의 부칙은 시행일과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하위 법령의 정비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과 유사하게 ‘권한의 위임·위탁 등’ 및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907호)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기관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권한을 보유

한 관리기관의 범주가 변동된다는 점에서 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8

참고 1

기본공간정보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 (개념)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통합·활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초적인 공간정보
 - *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도 기본공간정보를 선정·구축·관리
- (법적 근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 하위규정 :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국토교통부 고시, '04년 제정)
- (항목) 지형지물(도로·철도·하천 등), 경계(자연·인공·가상)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대분류 12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33개로 분류 (국토교통부 고시 '18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축기관
경 계	행정구역	법정경계	국토교통부
	통계구	행정경계	행정자치부
교통	도로	통계구	통계청
		도로경계선	국토지리 정보원
		도로경계면	
		도로노드	
		도로링크	
		인도	
	도로시설	점형도로시설	
		선형도로시설	
		면형도로시설	
	철도	철도경계면	
		철도노드	
		철도링크	
	철도시설	점형철도시설	
		면형철도시설	
해양	해양경계	해안선	국립해양 조사원
	해저지형	수심	
수문	하천	하천경계	국토지리 정보원
		실폭하천	
		하천중심선	
	수로시설	수로시설	
지적	연속지적도	연속지적도	국토교통부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행정자치부
지형	수치표고모형	수치표고모형	국토지리 정보원
지명	육상지명	육상지명	
	해양지명	해양지명	국립해양조사원
위치기준	측량기준점	측량기준점	국토지리 정보원
시설물	건물	건물	
	건물중심점	건물중심점	
	건물시설	건물시설	
영상	정사영상	정사영상	국토교통부
시설	입체모형	입체모형	

참고 2

해외 및 국내 기본공간정보 항목

자료: 국토교통부

구 분	항목	총괄기관
UN	①측지기준, ②지명, ③주소, ④용도지역, ⑤건물·주거, ⑥토지구획, ⑦교통, ⑧고도, ⑨인구, ⑩토지피복·이용, ⑪지질·토양, ⑫물리인프라, ⑬수계, ⑭정사영상	UN-GGIM
미국	①측지기준점, ②행정경계 및 통계, ③교통정보, ④육상 수자원, ⑤해양 수자원, ⑥지적, ⑦표고, ⑧항공영상	연방지리정보위원회
EU	①좌표계, ②격자체계, ③경계, ④교통, ⑤수문, ⑥지적, ⑦표고, ⑧건물, ⑨정사영상, ⑩주소, ⑪지명, ⑫보호구역, ⑬토지피복, ⑭지질, ⑮농업, ⑯보호지역, ⑰대기, ⑱생물구역, ⑲에너지자원, ⑳환경시설, ㉑생활권, ㉒건강·안전, ㉓토지이용, ㉔기상, ㉕광물자원, ㉖자연위험지대, ㉗해양, ㉘인구통계, ㉙산업시설, ㉚해역, ㉛토양, ㉜생물분포, ㉝통계단위, ㉞공공시설	EC (유럽공동체) INSPIRE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Europe)
일본	①측지기준점, ②행정경계, ③도로 경계선, ④철도 중심선, ⑤하천 경계, ⑥해안선, ⑦수위선, ⑧표고, ⑨건물, ⑩공공시설 경계선(도로관리 경계), ⑪공공시설 경계선(하천관리 경계), ⑫마을 경계선, ⑬거리 경계선	국립지리원
캐나다	①측지기준점 네트워크, ②행정경계, ③국가도로망, ④국가수로망, ⑤고도데이터, ⑥위성 정사영상, ⑦지명, ⑧얼라인먼트 레이어*, ⑨토지피복 레이어 * 위성영상 기하학적 보정에 사용된 지상점	자연자원부
한국	①위치기준(기준점), ②경계, ③교통, ④수문, ⑤해양, ⑥지적, ⑦지형, ⑧시설물, ⑨영상, ⑩주소, ⑪지명, ⑫시설(입체모형) * 대분류 : 12개 / 중분류 : 21개 / 소분류 : 33개	국토교통부

☞ 기본공간정보 공통항목 (3개국 이상) : 기준점, 행정경계, 교통, 수문, 해양, 지적, 지형, 시설물, 영상, 지명

참고 3

국가기본도와 기본공간정보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구 분	국가기본도	기본공간정보
근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
개념 (정의)	전국 대상 1:5,000 축척 이상으로 제작된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지도	GIS(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본 틀이 되는 기초 공간정보
성격	지도 (도엽 기반 / 2차원) 종이지도에서 출발하여 파일, DB(시스템 탑재) 형태로 발전	공간정보 (레이어 기반 / 2·3차원) 처음부터 GIS 시스템에 탑재를 전제로 DB 형태로 출발
범위	내륙	내륙 + 해양
형태	벡터(점선면)	벡터(점선면) + 래스터(격자)
내용	지형지물*, 행정경계, 지명(육상), 기준점 등 * 도로, 철도, 건물, 등고선, 하천 등	지형지물, 행정경계, 지명(육상 + 해양), 기준점, 지적, 주소, 통계구, 정사영상, 3차원 지형, 3차원 입체모형 등
구축 기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 2000년대 초반 도엽·파일 형태의 국가기본도를 기본공간정보에 부합한 DB 형태로 만들기 위해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 도엽별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본공간정보 항목 레이어별로 전국 연속화

- 2010년대부터 국가기본도를 전국이 연속되는 DB로 제작(레이어별 추출 가능)하고 있어 기본공간정보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음.

참고 4

K-Geo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1 목 적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표준화된 개발·공동활용 환경을 제공하는 정보체계로,
-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표준 통합DB 서비스와 행정사무지원 및 공간 정보 융·복합 활용 플랫폼 역할 수행

2 주요 기능 및 서비스

- 지도서비스 및 3D활용, 데이터 품질관리 등 K-Geo플랫폼 활용을 지원하고, 전국 단위 지적전산자료, 통계 및 정책정보 제공
- 공간정보의 수집과 기관별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토지 행정사무(부동산개발업,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등) 운영·관리

<시스템 구성도>



3 연차별 예산

구분	1차년도 (20.5~21.1)	2차년도 (21.4~22.1)	3차년도 (22.5~23.1)	'23운영 (23.1~23.12)	'24운영 (24.1~24.12)	합계
사업예산	84억원	59억원	94억원	32억원	40억원	309억원

□ 개 요

- 국가·지자체 등이 보유하는 공간정보를 통합·제공하여, 공공·민간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오픈플랫폼(www.vworld.kr)

□ 추진 경위

- 3D공간정보 DB·활용 시스템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10년)
- 3D지도(서초, 강남) 플랫폼 시범 구축('11년)
- 3D지도(서울, 6대광역시) 구축 및 브이월드 서비스 개시('12년)
- 3D구축지역 및 **OpenAPI**(데이터) 확대 제공('13~'14년)
- 오픈API 2.0 고도화 및 가상화 인프라·오픈소스 전환('17~'18년)
- 디지털 트윈국토 활성화를 위한 브이월드 **3.0** 추진계획 수립('23.6월)
- '디지털 트윈국토' **1단계**('23.8월), **2단계**('24.7월) 고도화 서비스 개시
- 브이월드 정보자원 민간 클라우드 환경 구성 및 전환('24.7월)
- '디지털 트윈국토' **3단계** 고도화 서비스 개시('25.1월)

□ 탑재DB 및 서비스 기능

- (탑재DB) 기반공간정보(6종)와 행정공간정보(896종) 등 총 **902종**의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웹 서비스로 제공
- (서비스 기능) 2D·3D지도 조회, 분석 서비스, 다운로드, 오픈API 및 데스크톱 서비스, 기업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활용 현황

- (회원 가입자수) 누적 회원수 약 **19.9만 명**('12~'24년)
- (인증키 발급건수) OpenAPI 인증키 발급 약 **7만2천 건**('12~'24년)
- (API호출건수) 최근 3개년 평균 약 38억 건('22~'24년)

□ **탐재 공간정보(902종)**

기반공간정보(6종)					
구분	데이터명	유형	구분	데이터명	유형
1	정사영상	래스터	2	배경지도 4종	래스터
3	공간정보 입체모형	래스터	4	POI(관심지점정보)	래스터, 속성
5	수치표고모형	래스터	6	실내공간정보	벡터

행정공간정보(896종)			
순번	구분	데이터명	비고
1	국토관리 및 지역개발	건물/시설(44종), 경계(21종), 도시계획(36종), 부동산(9종), 산업단지(15종), 수자원(30종), 용도지역지구(223종), 토지(54종), 건축물연령정보(2종), 용도별건물정보(2종), 지가변동률정보(6종), 토지특성정보(2종), GIS건물일반집합정보(2종), 개별공시지가정보(4종), 공동주택가격정보(2종), 도서(섬), 정보(2종), 부동산개발업정보(4종), 부동산중개업정보(3종), 토지소유정보(2종), 토지이동이력정보(1종), 토지이용계획정보(2종), 통계성지표정보(4종), 표준지공시지가정보(2종), GIS건물통합정보(1종), 공유지연명정보(1종), 대지권등록정보(1종), 법정구역정보(3종), 연속지적도형정보(1종), 용도지역지구정보(160종), 지적도근점정보(1종), 지적삼각보조점정보(1종), 지적삼각점정보(1종), 토지등급정보(1종), 토지임야정보(1종)	644종
2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5종), 임업/산촌(42종), 해양/수산/어촌(29종)	76종
3	도로·교통·물류	교통(27종), 도로(10종), 철도(2종), 해운/항만(2종), 정밀도로지도(15종), 항공/공항(21종)	75종
4	문화·체육·관광	문화재(5종), 관광(2종), 문화예술(2종), 체육(5종)	14종
5	보건·의료	보건·의료(3종)	3종
6	산업·중소기업	에너지(5종), 산업(3종)	8종
7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6종), 학교(4종)	10종
8	공공안전·재난방재	공공안전(1종), 재난방재(7종)	8종
9	환경·자연·기후	자연(17종), 환경보호(8종)	25종
10	사회복지	노동(1종), 사회복지(4종)	5종
11	과학기술·통신	정보통신(4종)	4종
12	교육	교육시설(5종)	5종
13	지도	고도(2종), 기준점(8종), 기타(9종)	19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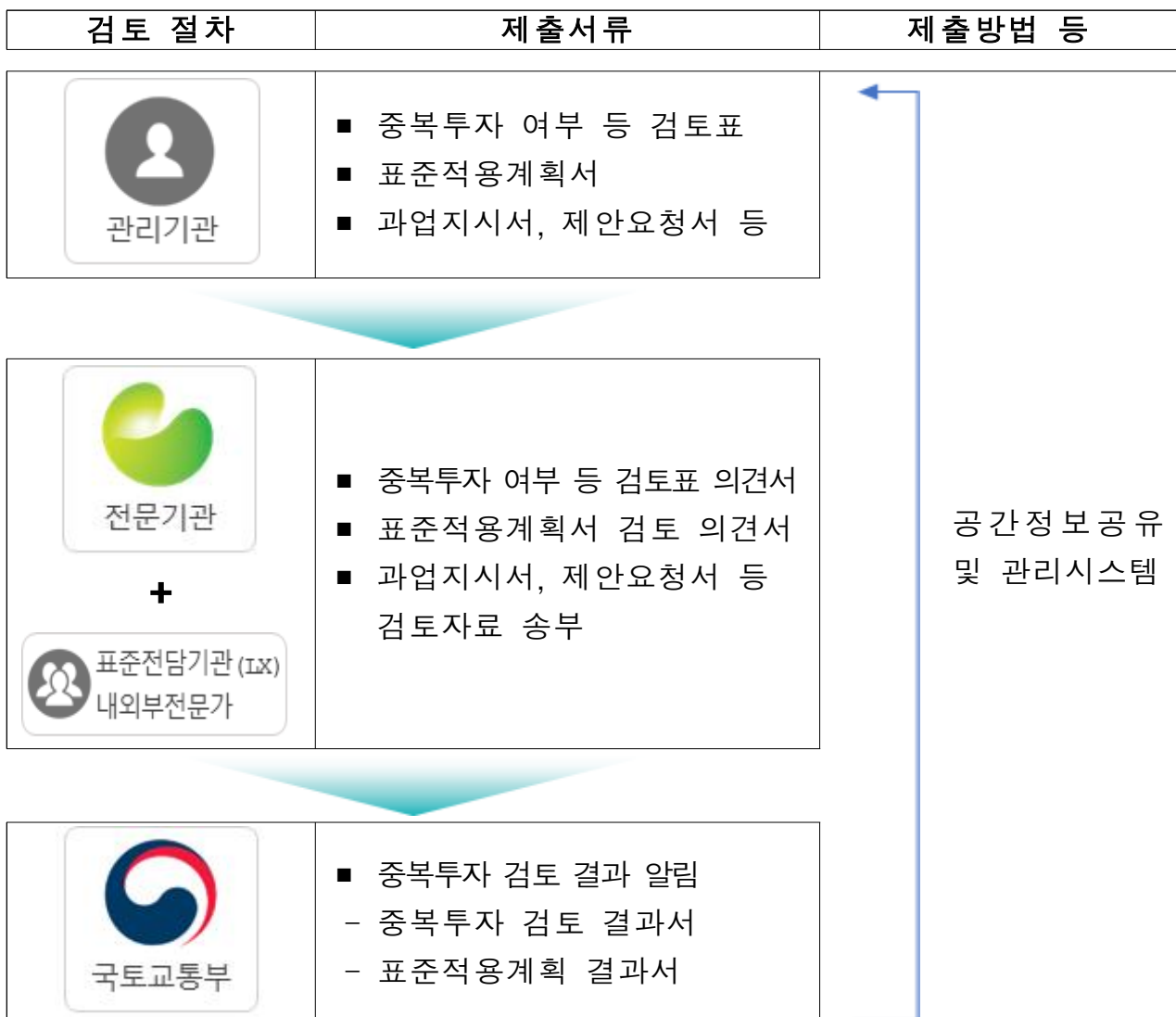
참고 6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중복투자 여부 검토 절차

자료: 국토교통부

- 법적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목 적 : 상호운용성 검토를 통한 중복투자방지 및 연계 활용성 제고
- 주요내용 :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 구축 여부 및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

□ 중복투자 여부 등 검토 절차



참고 7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기준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별표 1]

보안심사 기준

1.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항목	세부항목	상세 내용
1. 관리 체계	1.1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관리 책임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2 공간정보 보안등급 관리	공개제한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모든 공간정보에 대해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안등급을 식별·분류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3 사고 예방 및 대응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유출 등을 예방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4 사용 만료 시 보안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사용 목적 종료 또는 보안심사 유효기간 만료 시 공개제한 공간정보 파기 등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인적 보안	2.1 관리 책임자의 지정	관리 책임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취급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정보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2 보안 서약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은 관련 법규, 내부정책,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
	2.3 접근권한 부여 및 관리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이나 관련 시스템 접근 등이 필요한 대상 직무를 지정하고 정보 취급자는 정규직원에게 한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며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4 직무변경 관리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정보반납, 접근권한 회수 등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2.5 교육훈련	정보 취급자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접근 통제	3.1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2 인터넷 접속 통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3.3 전용 단말기 지정	공개제한 공간정보 처리를 위한 전용 단말기를 지정하고, 인터넷 등 외부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여 사용한다. 단, 관련 서버 또는 단말기 등을 일시적으로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비인가 접근 통제, 공간정보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 후 관리기관으로부터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3.4 네트워크 분리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연결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무선 네트워크 차단 등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항목		세부항목		상세 내용
		3.5	업무환경 보안	공용 사무기기, 개인 업무환경(PC, 책상 등)을 통해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한다.
4.	물리적 보안	4.1	보호구역 지정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취급 또는 처리는 금지한다.
		4.2	출입통제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 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출입 및 접근 이력을 기록·관리한다.
		4.3	반출입 기기 통제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제3자에게 제공 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항목		세부항목		상세 내용
1.	관리 체계	1.1	공간정보 보안등급 관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경우 공간해상도, 좌표체계, 정밀도, 자체측량성과 포함여부가 표시된 데이터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공간정보 보안등급을 분류한 후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제공 계획 수립	외부에 제공하려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종류, 제공받는 대상을 명시하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보안심사 유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기술적 보호	2.1	암호화 적용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또는 작표를 가상화하여야 한다.
		2.2	복구키 등 관리	암호키 또는 가상작표에 대한 복구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3.	정보 통신망 보안	3.1	클라우드 보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한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받은 관리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비인가 접근 통제·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3.2	공개서버 보안	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접근통제, 인증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3.3	접근통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접근이 허용된 사용자의 권한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IP관리, 단말인증 등 사용자 관리체계를 적용한다.
		3.4	접속기록 관리	공개제한 공간정보 저장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 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4.	제공 기록 관리	4.1	반출입 기록 관리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온·오프라인 제공 내역을 관리대장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관리한다.
		4.2	제공내역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내용 등 제3자 제공 내역을 분기별로 관리기관에 통지한다.